

1. 개정 이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위탁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안 제12조 및 별표4) 법 제25조제3항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절차 정비(안 제13조)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히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안 제39조의2)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을 신설함

라.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7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는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용 조항 및 서식 정비(안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18,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의13서식, 별지 제15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1)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로목 및 모목은 개정 전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2)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추가함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시설 추가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른 인용조항 및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의 위탁)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4의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히 별표 5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2조, 제1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을

“전산망”으로,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를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의 경우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의사를 응급의료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곤란 여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수용곤란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등의 수용곤란 사유
2.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 및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비상진료체

계 당직전문의 등 현황

3. 응급의료기관 병상 및 시설, 장비 등 현황

⑥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도 불구하고,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한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 제2호가목의 헬기장의 세부기준란 기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주) 중 “함”을 “하며, 외상소생실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침대를 갖춘 경우 수술대를 갖춘 것으로 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제2호로목 위반사항란 로목 중 “법 제51조제4항”을 “법 제5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모목 위반사항란 모목 중 “법 제51조제5항”을 “법 제51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1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 제39조의2, 별표 4,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의13서식, 별지 제15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기준(제12조관련)

1. 시설 및 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 1)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물류창고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위탁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인력기준

- 1)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1명을 둔다. 다만,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임명한다.
- 2)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며, 응급의학에 학식이 풍부한 자 중 응급의료 분야에서 15년 이상으로 진료 및 연구현장에서 10년 이상 부서장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통기준

- 1)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 것
- 2) 전국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 것
- 3)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 것
- 4) 응급의료기관 등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 것

2. 직제기준

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두고, 업무 수행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장 직

속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두어야한다

3. 운영기준

-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 2)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 운영 인력에 대한 인사에 관한 기록
 - 3)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 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사업, 예산, 결산 및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회계는 위탁받은 기관의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신청서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의료기관	명 칭	개설허가일	
	개설허가번호	허가병상수	
	전문과목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의사면허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제17조의3제2항·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2.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4.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재)지정서 작성	→	(재)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제 호

-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기간: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16조제3항·제17조제4항·제17조의3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명칭		전화번호					
설치기관	구분	[] 공공보건의료기관 [] 119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여객 항공기 [] 공항 [] 철도차량 중 객차 []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항만시설의 대합실 [] 카지노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외국인보호소·소년원 [] 운동장·종합운동장 [] 중앙행정기관 청사 [] 시·도 청사					
	그 밖의 기관	건강	[] 의료기관 [] 요양기관				
		공공시설	[] 구비의무기관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사회복지시설 [] 학교 [] 경찰관서 [] 국방·군사시설 [] 종교시설 [] 기타()				
		교통시설	[] 지하철역 [] 버스정류장 [] 택시승강장 [] 기타()				
		구급차	[]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상업시설	[] 사무실 [] 은행 [] 쇼핑몰 [] 주유소 [] 식당 [] 기타()				
		숙박·여가	[] 숙박시설 [] 공원 [] 수영장 [] 헬스장 [] 그 밖의 스포츠시설 [] 기타()				
		공동주택	[] 500세대 미만				
	기 타						
	주소						
응급장비	제조국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설치위치	설치일자
관리 책임자	성명	주 관리책임자(0/X)		직위	전화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장비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접수 시·군·구 (담당부서)	→ 검토 시·군·구 (담당부서)	→ 결재 시·군·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필지(80g/㎡)]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1.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장비 기관분류별 설치장비 수/관리책임자 수, 대/명)																			
구분	설치기관	구비의무기관 설치장비 수																그 밖의 기관 설치 장비 수	
		공공보건 의료 기관	소방 구급 대 구급차	의료 기관 운용 구급차	여객 항공 기 및 공항	객 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관할 구역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기타:																			
3. 응급장비 사용 건수:																			
○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작성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명칭

구분

전화번호

구비 의무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 119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 여객 항공기 [] 공항 [] 철도차량 중 객차

[]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 철도역사의 대합실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항만시설의 대합실

[] 카지노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외국인보호소·소년원

[] 운동장·종합운동장 [] 중앙행정기관 청사

[] 시·도 청사

건강 [] 의료기관 [] 요양기관

공공시설 [] 구비의무기관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사회복지시설 [] 학교 [] 경찰관서

[] 국방·군사시설 [] 종교시설

[] 기타()

교통시설 [] 지하철역 [] 버스정류장 [] 택시승강장

[] 기타()

구급차 []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상업시설 [] 사무실 [] 은행 [] 쇼핑몰 [] 주유소

[] 식당 [] 기타()

숙박·여가 [] 숙박시설 [] 공원

[] 수영장 [] 헬스장 [] 그 밖의 스포츠시설

[] 기타()

공동주택 [] 500세대 미만

기 타

주소

제조국	제조사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설치위치	설치일자

신고내용

양도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기관			사유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폐기	폐기 예정일				사유
이전	이전 예정일		이전 예정 위치		사유

관리 책임자

성명	주 관리책임자(0/X)	직위	전화번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신고인

귀하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접수
시·군·구 (담당부서)

➡

검토
시·군·구 (담당부서)

➡

결 제
시·군·구 (담당부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의 위탁)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4의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에 따라 지정한다.

<단서 신설>

② ~ ⑥ (생략)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① -----

다만,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히 별표 5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
과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앙응
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권역응급의료센터 ---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② (생략)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에 따른 심사 및 결정은 <u>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u> ,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서로 실시한다.	③ ----- ----- <u>권역응급의료센터</u> ----- ----- -----.
④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u>제12조</u> , <u>제13조</u> ,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8조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④ ----- ----- ----- <u>제13조</u> -----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u>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u>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u>확인</u>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통보</u>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① ----- ----- <u>전산망</u> ----- ----- ----- <u>확인</u> ----- -----.
1. ~ 4. (생략)	단,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의 경우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 수용관련 의사를 응급의료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u>
	1.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u>현황에 비추어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u> 2. 그 밖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응급환자 수용 곤란 여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며,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u>수용능력 확인에도 불구하고, 인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곤란한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것임을 통보 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시·도응급의료위원회에서 마련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수용곤란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등의 수용곤란 사유 2.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 및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당직전문의 등 현황 3. 응급의료기관 병상 및 시설, 장비 등 현황		
<u><신 설></u>	⑥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